

무배당 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설보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사 업 방 법 서

무배당 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설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설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전기납	만15세~70세	월납

3.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4.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설정 범위 : 기본보험료의 30배 ~ 50배
보험가입금액 가입 한도 : 최저 600만원 이상 최고 99억원 이하
보험가입금액 최소 가입 단위 : 10만원

다만, 판매채널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보험료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간 중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가. 약정보험료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계약시점에 약정한 보험료로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말한다.

(1)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20만원 이상, 가입단위 1만원이상으로 한다.

(2) 특약보험료 : 특약이 부가된 경우 기본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입하여야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약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로서 해당월의 약정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하다.

- (1)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1 회 납입 가능한 수시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수시 및 월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합계
- (2) 월추가납입보험료 : 매월 약정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월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한다.
- (3) 수시추가납입보험료(다만, 제1회 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는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제외)는 제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후부터 납입 가능하다.

6.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약정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 (1) 계약일 이후 12년(144회 납입, 이하 “의무납입기간”이라 한다)까지는 계약체결시 정한 약정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납입)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한다)를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 (3) (1)호 및 (2)호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약정보험료 의무납입기간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및 납입완료시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4)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기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에 투입(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되어 적립된다.
- (5)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최대 36개월(다만, 신청 전에 누적된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36개월에서 제외한다)을 최고 한도로, 1회 신청시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8)호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해당 약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 (6)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약정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월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7)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의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제외),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체결시 정한 특약의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이하 “월대체보험료”라 한다)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한다.

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으면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함)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함)

나. “ 가” 항에서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라 함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약관 제 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 납입일시중지기간” 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늘어납니다) 동안은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8.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나. “ 가”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 나”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산하는 경우의 “ 인출(또는 감액)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라 함은 해당 인출(또는 감액) 발생 전에 인출(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 나”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한다.

9.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 제외)” 를 말한다.

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 보증준비금 산출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2) (1)호에 따라 적립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사망보험금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10.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 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증액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 항에 의하여 감액된 기본보험료 및 감액에 의한 월대체보험료의 변경된 사항은 기본보험료 감액시점 이후에 최초의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된다.

11.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으로 보험가입금액별 기본보험료의 최저한도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 항의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의한 월대체보험료의 변경된 사항은 보험가입금액 감액시점 이후에 최초의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된다.

다.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보험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2.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제“가”항 또는 제“나”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적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기준을 따른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MMF형 펀드

단기 우량채권, MMF(집합투자기구(펀드)), 유동성자산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유동성 및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CD, 콜론, MMF 등	100%

② 채권형 펀드

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A- 이상), 유동성 자산 등	100%

③ 글로벌채권형 펀드

글로벌채권형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글로벌채권 관련 펀드 등	95%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④ 글로벌인컴 펀드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집합투자기구)에 80% 이내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2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채권뿐 아니라 해외 채권 및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해외 투자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등)	80% 이내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유동성 자산 등	20% 이상

⑤ 인덱스주식형 펀드

KOSPI200 주식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KOSPI200 주식 등	95%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⑥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펀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해외 주식 및 주식 관련 해외 펀드 등	70% 이내
국내 주식	30%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⑦ EMEA주식형 펀드

EMEA(이머징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EMEA(이머징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펀드 등	95%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	-------

⑧ 중소형주식형 펀드

국내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형주 위주의 투자로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하는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로서, 95%이내의 자산을 해당 주식 또는 집합투자기구에(펀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내 투자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등)	95% 이내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5% 이상

⑨ 배당주식형 펀드

고배당주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 하고 배당수익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저평가된 우량 종목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자본이익을 실현하고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안정적 risk/return profile을 추구하는 운용전략을 가진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내 투자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등)	95% 이내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5% 이상

⑩ 미국주식형 펀드

미국주식형 펀드는 S&P500 지수에 연동된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로서, 미국 주요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통해 미국 경제 전반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주식, 미국주식형수익증권, 미국주식형ETF 등	95% 이내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⑪ 유로주식형 펀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기업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유럽연합 국가 기업의 주식 또는 동지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주식형ETF 등	95% 이내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⑫ 인컴앤그로스 펀드

미국 또는 캐나다 등 선진국에 소재한 발행자의 주식과 같은 지분성 상품 (equity instruments), 고수익채권, 전환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 정기적인 이자수입을 달성하는 투자목표를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선진국 주식, 선진국 고수익채권 또는 전환사채,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⑬ 글로벌배분 펀드

총투자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세계의 모든 주식, 채권, 단기증

권에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단기증권,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⑭ 월드주식형 펀드

전세계 주식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투자목표를 가지고 전세계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지수(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등)를 상회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주식,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⑮ 미국중소형주식형 펀드

장기적 자본성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의 주요 거래소나 시장에서 매매 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주식(중소형회사),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⑯ 미국인컴주식형 펀드

평균수준이상의 실질 수익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가치상승을 통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로 평균이상의 배당수익을 주고 장기적으로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중대형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또는 북미) 기업의 주식, 단기채권,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⑰ 유로채권형 펀드

주로 유로 지역의 국공채 및 공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에 따라 추가 수익을 위해 옵션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유로지역의 국공채, 공사채, 우량회사채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⑱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펀드

실질 자본 보전과 신중한 투자관리를 통해 실질 수익의 극대화 추구를 투자목표로 하는 펀드. 대부분의 자산을 전세계에서 발행된 채권 또는 인플레이션을 보전할 수 있게 구조화된 인플레이션에 연계된 채권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국공채, 공사채, 우량회사채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⑩ 미국고수익채권형 펀드

미국 또는 미국 외 발행자의 투자등급 또는 낮은 등급의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 미국 외 발행자의 채권, 채권관련지수, 채권관련파생상품,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⑪ 미국채권형 펀드

미국 또는 미국 외 발행자의 다양한 고정이자 포트폴리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과 자산가치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 미국 외 발행자의 채권, 채권관련지수, 채권관련파생상품,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⑫ 자산배분펀드 안정추구형

해외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의 하위 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대상 자산, 지역, 섹터에 대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찾고자 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참조 지수 또는 기타 자산,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⑬ 자산배분펀드 중립형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하위 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대상 자산, 지역,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참조 지수 또는 기타 자산,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⑭ 자산배분펀드 적극형

해외 주식 등 투자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대상 자산, 지역,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	-------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참조 지수 또는 기타 자산,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 (2) (1)호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호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상기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해당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4) (1)호에서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운영보수
MMF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6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5342%)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1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13836%)
글로벌채권형 유로채권형 펀드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펀드 미국고수익채권형 펀드 미국채권형 펀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4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49452%)
글로벌인컴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76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209726%)
인덱스주식형 자산배분펀드 안정추구형 자산배분펀드 중립형 자산배분펀드 적극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62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71370%)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71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96027%)
EMEA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78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215205%)
중소형주식형 배당주식형 미국주식형 유로주식형 월드주식형 펀드 미국중소형주식형 펀드 미국인컴주식형 펀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75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57671%)

구 분	운영보수
인컴앤그로스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7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01370%)
글로벌배분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48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131507%)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구 분	투자일임보수
MMF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0000%)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8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49315%)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4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10959%)
글로벌인컴 유로주식형 인컴앤그로스 미국채권형 펀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5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13699%)
인덱스주식형 자산배분펀드 안정추구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0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54795%)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유로채권형 펀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27397%)
EMEA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8219%)
중소형주식형 펀드 배당주식형 펀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2740%)
미국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6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16438%)
글로벌배분 월드주식형 펀드 미국중소형주식형 펀드 미국인컴주식형 펀드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펀드 미국고수익채권형 펀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19178%)
자산배분펀드 중립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5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68493%)
자산배분펀드 적극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3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82192%)

(3)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구 분	특별계정 수탁보수
MMF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300%

구 분	특별계정 수탁보수
채권형 인덱스주식형 중소형주식형 배당주식형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8219%)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인컴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EMEA주식형 미국주식형 유로주식형 인컴앤그로스 글로벌배분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4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10959%)
월드주식형 미국중소형주식형 미국인컴주식형 유로채권형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미국고수익채권형 미국채권형 자산배분펀드 안정추구형 자산배분펀드 중립형 자산배분펀드 적극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274%)

(4)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구 분	사무관리보수
MMF형 채권형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인컴 인덱스주식형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EMEA주식형 중소형주식형 배당주식형 미국주식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245%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6712%)
유로주식형 인컴앤그로스 글로벌배분 월드주식형 미국중소형주식형 미국인컴주식형 유로채권형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200% (매일 특별계정적립금의 0.00005479%)

미국고수익채권형 미국채권형 자산배분펀드 안정추구형 자산배분펀드 중립형 자산배분펀드 적극형	
---	--

- (5) (1)호, (2)호, (3)호 및 (4)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적용한다.
- (6) 특별계정의 펀드를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호, (2)호, (3)호 및 (4)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나”항에서 정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펀드를 합하여 최대 7개이고, 이는 납입보험료 투입비율 변경이나 펀드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각각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②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선택한 펀드 유형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펀드에 투입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 투입비율은 각 보험료 납입액의 10%이상이어야 하며, 1%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른다.
- ④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① 내지 ③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각각에 해당하는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3) 펀드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변경요구일 + 제4영업일”의 기준

가격(“바”항 (2)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③ 펀드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4) 펀드자동재배분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② 계약자가 (2)호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된다.

③ 계약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1)호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만,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전일 종가(마감가격)기준)}}{\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호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한다.
- ② ①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특별계정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순자산가치가 50억 미만인 경우
 - ③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순자산가치가 50억 미만인 경우
 - ④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⑤ 기타 ① 내지 ④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 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2)호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3. 계약자적립금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20. 기타 사항”의 “가”항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계약자 신청에 의한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3)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4)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5) 연금전환특칙으로 전환된 경우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20. 기타 사항”의 “가”항에서 정하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②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 + 제2영업일”

③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 ④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신청일 + 제2영업일”
 - ⑤ 계약이 소멸, 해지된 경우 “ 소멸 또는 해지일” (다만, 약관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 ⑥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하는 경우 “ 계약해당일”
 - ⑦ 연금전환특칙으로 전환된 경우 “ 신청일 + 제2영업일”
 - ⑧ 기타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날”
- (3) (1)호 및 (2)호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은 “ 신청일 + 제2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 나. “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16.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약정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약정보험료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 비용 이상의 금액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납입시 부과하는 계약 관리비용 이상의 금액

나. “가”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은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 시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 시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 시까지의 가산이자 포함)과 “가” 항의 금액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부가사업비(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포함) 및 특약보험료 차감)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 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라. “가”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된다.

마. “다”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가” 항의 금액이 납입된 경우에는 “가” 항의 금액 납입일 + 제2영업일” 을, “가” 항의 금액이 납입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로 한다.

17.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계약자적립금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1.5%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된다.

다. 계약자는 “가”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 까지 제2영업일 동안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함과 동시에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은 펀드별 계약자적립금비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차

감한다.

마.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8. 선납보험료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12회 납입) 이내에 해당하는 약정보험료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선납보험료는 당월 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한다. 이때 선납보험료는 약정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적립하고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부리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다. “ 나 ”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월계약해당일(다만, 선납보험료 중 당월분인 경우는 “ 납입일 + 제2영업일 ”)을 말한다.

19. 연금전환특칙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특칙을 활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전환 할 수 있다.

가. 이 특칙은 약관에서 정한 연금전환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나. 이 특칙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은 특칙 전환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와, 주계약(전환전 계약) 가입당시의 이 특칙의 약관 및 보험요율(최저보증이율, 연금사망률, 사업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한다.

다. 특칙의 연금지급형태 및 보험기간(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보 험 기 간(연금지급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라. 특칙의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마. 특칙의 연금개시나이
45세 ~ 80세

바. 특칙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사. 특칙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칙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특칙에 일시로 납입되는 전환전계약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으로 함

아. 특칙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1) 이 특칙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 - α)

(a)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A1 \times \beta + 1 + A2 \times (1 - \beta)$
 - A1 :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의 수익률로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외부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외부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국고채(A1)와 회사채(A2)의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국고채의 가중치(β) = $\frac{a}{a+b}$

- 회사채의 가중치(1 - β) = $1 - \frac{a}{a+b}$

-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b) 운용자산이익률은 “ 운용자산수익률” 에서 “ 투자지출률” 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B1(운용자산수익률) - B2(투자지출률)

-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 회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 소요된 투자영업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B_1 (\text{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B_2 (\text{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c)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 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frac{A+B+C}{A+C}$

◦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 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 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하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전년도 초 보험료적립금(A)과 자산의 직전년도 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수입보험료(C)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3)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를 통해 매월 공시한다.
- (5) 적립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한다.
- (6)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20. 기타 사항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회 보험료는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계약이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다.
 - ② 제2회 이후의 약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보험료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납입기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납입기일 - 제1영업일” 에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 + 제1영업일” 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 + 제1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 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약정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 및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의 약정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 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 되기 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①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2)호 ②에도 불구하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납입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 납입일” 부터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 한도 등)
- (3)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장기납입유지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

- (1)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7년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1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 의 “ 가” 항 (1)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기본보험료의 5.0%를 더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정한다.
- (2)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1)호를 정한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바.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부가특약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 험 증 권(보 험 가 입 증 서) 의 서 식

(생 략)

(별첨 제2호)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생 략)

(별첨 제3호)

부 활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생 략)